

의무소방대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1
------------	------

발의연월일 : 2016. 10. 28 .

발의자 : 박정 · 어기구 · 김해영
황주홍 · 윤후덕 · 서영교
신경민 · 권칠승 · 정인화
박광온 · 이철희 · 안규백
김종훈 · 박재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리적 장애의 발생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건안전 교육훈련) ① 제1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 소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3. 안전장비, 보호구의 점검 및 유지관리
 4. 감수성 향상을 위한 현장 유형별 위험예지훈련
 5.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조절 교육
 6.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7.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8.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교육훈련의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의2(보건안전 교육훈련) ①</u></p> <p><u>제1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u> <u>의무소방원에게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안</u> <u>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u> <u>다.</u></p> <p><u>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u> <u>및 위생관리 요령</u></p> <p><u>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u> <u>교육</u></p> <p><u>3. 안전장비, 보호구의 점검 및</u> <u>유지 관리</u></p> <p><u>4. 감수성 향상을 위한 현장 유</u> <u>형별 위험 예지훈련</u></p> <p><u>5.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조절</u> <u>교육</u></p> <p><u>6.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u> <u>정신질환에 대한 이해</u></p> <p><u>7.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u></p> <p><u>8.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u> <u>사항</u></p> <p><u>② 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교</u> <u>육훈련의 주기, 방법 등에 필요</u></p>

<p><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p> <p><u>다.</u></p>
--